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자동 검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밑에 202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 수입안전기획과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,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중 1명(4급 1명)은 종전의 인력(5급 1명)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, 2명(6급 2명)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,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5. 00. ~ 2021. 5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수입식품안전정책국에 수입식품정책과·현지실사과·수입검사관리과·수입유통안전과 및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를 두되, 수입식품정책과장·현지실사과장·수입검사관리과장·수입유통안전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⑦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자동 검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2. 수입식품 디지털 검사를 위한 정보 수집·관리·분석에 관한 사항
3. 수입식품 분야 인공지능 활용 모형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
4.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제28조제1항 단서 중 “8명”을 “8명) 및 2명(행정주사·식품위생주사·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)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2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“20”을 “21”로 하고, 행정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의무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수의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“109”를 “108”로 하며, 행정주사 · 식품위생주사 또는 수의주사 8 다음에 “행정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”를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[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]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
제3조(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3의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, 2023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3의2 행정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의무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수의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으로 본다.

제4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3의2 정원 2명(행정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)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수입식품안전정책국) ① (생 략) ② <u>수입식품안전정책국에 수입 식품정책과 · 현지실사과 · 수입 검사관리과 및 수입유통안전과 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 수석 전문관으로 보한다.</u>	제10조(수입식품안전정책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수입식품안전정책국에 수입 식품정책과 · 현지실사과 · 수입 검사관리과 · 수입유통안전과 및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를 두 되, 수입식품정책과장 · 현지실 사과장 · 수입검사관리과장 · 수 입유통안전과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 수석 전문관으로, 디지털수입안전기 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 관으로 보한다.</u>
③ ~ 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③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<u>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 1. <u>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자 동 검사체계 구축에 관한 사 항</u> 2. <u>수입식품 디지털 검사를 위 한 정보 수집 · 관리 · 분석에 관한 사항</u> 3. <u>수입식품 분야 인공지능 활 용 모형 개발 및 연구에 관한</u>

제28조(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「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, 별표 3의2의 정원 중 8명(행정주사·식품위생주사 또는 수의주사 8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 ②·③ (생략)	<u>사항</u> 4. <u>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u> 제28조(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8명) 및 2명(행정주사·식품위생주사·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)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	---

신 · 구 정원 대비표

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3의2]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(제28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· · <u>20</u>	· · <u>21</u>	+1
· ·	· ·	· ·	
행정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의무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수의 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	<u>109</u>	<u>108</u>	-1
· ·	· ·	· ·	
<u>행정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수의</u> <u>주사 또는 전산주사</u>	<u><신 설></u>	<u>2</u>	+2
· ·	· ·	· ·	